

형사소송법

【문 1】 아래의 각 물음에 답하시오(아래 각 물음은 상호관련성이 없음, 관련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 논거를 포함시킬 것,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따름).

1. 피고인은 2018.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각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음). 제1심 법원은 위 정식재판 사건(2018고정000)을 2018고단0000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에 병합하였고, 이후 7건의 사건을 추가로 병합하였다. 제1심은 2019. 7. 12.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은 2019. 10. 11.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항소심의 판단이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10점)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9. 5. 피고인에 관한 2019고단0000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한다)에서 각 사기죄, 상해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1. 26.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정식재판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진 2019고정0000(이하 ‘제2사건’이라고 한다.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음)에서 2019. 9. 26. 위 폭행죄, 모욕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항소심은 2019. 12. 12. 제1사건의 항소사건(쌍방 항소함)과 제2사건의 항소사건(피고인만 항소함)이 병합되었음을 이유로 위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 다음,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각 선택한 후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의 판단이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아래의 각 물음에 답하시오(아래 각 물음은 상호관련성이 없음, 관련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 논거를 포함시킬 것,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따름).

1. 甲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8. 23.부터 2012. 2. 21.까지 총 43회에 걸쳐 합계 23,490,000원을 환자 소개의 대가 명목으로 교부하면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양벌규정인 의료법 제91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나, 제1심은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 같은 조 제4항의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제1심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10점)

2.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3. 20.부터 2018. 3. 26.까지 총 18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제1심과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하여 증거를 동의하였다(아래 가, 나항은 상호 관련 없음).

- 가. (위 기초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가사실)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는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할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및 여기에 기억된 저장정보를 탐색하여 복제·출력한 영상캡처 사진과 복제된 영상파일이 있었다(위 휴대전화기와 관련하여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은 사실은 없다).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 자체는 적법하였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5점)

- 계 속 -

나. (위 기초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가사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오로지 2018. 3. 26.자 범행과 관련하여 작성한 위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있었는데, 위 압수조서에는 “2018. 3. 26. 07:30경 지하철 O호선 A역 승강장 등에서 경찰관이 비노출 잠복근무 중 검정 재킷, 검정 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20대 가량의 남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여성을 쫓아가 뒤에 밀착하여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집어넣는 등 해당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2018. 3. 26.자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면서 위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각 기명날인이 들어가 있었다. 이 경우 피고인의 각 범행에 관하여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5점, 만약 범행별로 그 여부가 달라질 경우 이를 구분하여 설명할 것)

3.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인 甲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검사가 신청한 증인 乙은 법정에 출석하여 ‘甲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위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였다. 한편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인 甲은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위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은 인정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위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그리고 乙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